

요약

EU 회원국들의 국경 간 보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화된 보험계약자보호제도(IGS) 도입의 중요성이 커짐. 이에 EIOPA는 최소한의 통일된 표준 마련을 목적으로 보장 범위, 운영 절차 기준 등 표준화된 IGS 기술자문 초안을 발표함. 반면 유럽보험협회(Insurance Europe)는 동 초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, EU 내 표준화된 IGS 도입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함

- EU 회원국들의 국경 간 보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화된 보험계약자보호제도(Insurance Guarantee Schemes, 이하 'IGS') 도입의 중요성이 커짐
 - EU 회원국의 보험회사는 단일 면허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사업할 수 있으며, 점차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산 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IGS의 중요성이 커짐
 - 하지만 회원국마다 IGS의 유무, 보장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EU 회원국 간 보험계약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
 -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IGS를 보유한 국가는 최소 17개국이며(자동차 대인배상 보장기금은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), 그 외 국가의 계약자는 추가 보호를 받지 못함
 - IGS가 시행 중이더라도 국가별로 IGS 작동 기준, 보험금 청구 기한 및 지급 기한 등 세부 규정에서도 차이가 존재해 보험계약자의 혼란과 보호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함
 - 이에 따라 EU 내 보험계약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표준화된 IGS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
- 2026년 5월 EIOPA(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)는 「EU 내 IGS의 최소 공통 표준에 관한 기술 자문 초안」을 발표했으며, 보장범위를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타겟형 IGS와 예측 가능한 보호를 위한 운영 절차 기준을 명시함¹⁾
 - EIOPA의 기술자문 초안은 IGS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, EU 회원국 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표준 마련을 목적으로 함
 - 초안에 따르면 비용 효율성 유지를 위해 특정 보호대상이나 보험계약으로 보장 범위를 한정하는 타겟형 IGS(Targeted IGS)를 최적의 방식으로 명시함
 - 개인이나 초소형기업(Micro-sized entity) 계약자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결혼·출산 보장을 제외한 생명보험상품과 화재 및 재물손해, 배상책임, 상해, 보증, 질병 등 핵심 손해보험상품만을 보장 범위로 포함하도록 지정함

1) EIOPA(2026. 5. 5.), "EIOPA'S ADVICE ON MINIMUM COMMON STANDARDS FOR INSURANCE GUARANTEE SCHEMES IN THE EU"

-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약화·파산 시 회원국의 보험계약자가 예측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IGS 작동 기준 시점, 보험금 청구 기한 및 지급 기한, 계약 유지 등의 실무 집행 기준을 표준화하도록 함
 - IGS 작동 시점은 파산 결정·법원 판결 또는 면허 취소나 청산 등 국가 간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부실화 되었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기간 내 이를 방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기준 시점으로 명시함
 -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과 최대 보험금 지급 기한을 정해야 함
 - 대체 상품을 찾기 어려운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단순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을 다른 건전한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

○ 또한 보험회사 파산 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방안과 2027년 시행 예정인 IRRD(보험 회생 및 정리 지침)²⁾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명시함

- 모든 회원국은 보험회사의 파산 즉시 자금 집행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, 다만 각국 상황에 맞는 자금 조달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함
 -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분담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긴급 차입, 신용공여 또는 한 국가 내 사업 부문별로 다른 IGS 기금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IGS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등을 제시함
- 2027년 1월 30일부터는 IRRD가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회사 정리 절차 시 IGS를 통해 적절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명시함
- 이를 위해 국가 정리당국(National Resolution Authorities)과 IGS 간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되 구체적인 운영체계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도록 권고함

○ 반면 유럽보험협회(Insurance Europe)는 동 기술자문 초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표준화된 IGS 도입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시행 예정인 규제의 일관된 이행, 감독 당국 간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함³⁾

- 유럽 보험시장은 2027년 Solvency II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보호가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, IRRD 이행 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립되기 전 IGS 의무화는 규제의 중복과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짐
- 보험상품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, 사법 체계와 깊게 연계되어 있어 EU 전체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, 국경 간 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IGS의 부재가 아니라 언어, 계약법 등 구조적 차이임
- 또한 은행 예금자보호제도의 경우뱅크런과 이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보험계약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보험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
- 따라서 새로운 IGS 기준을 도입하기 전 Solvency II 개정안과 IRRD의 일관된 이행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, 각국의 감독 당국 간 협력 강화, EU 전역에서 활동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

2) Insurance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; EU 내 금융 위기 발생 시 보험회사 및 관련 기관의 위기 대처 규정으로, 보험회사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회복 계획 및 정리 수단을 수립하도록 함

3) Insurance Europe(2026. 6. 25.), "Final - EIOPA IGS Consultation"; Insurance Europe는 유럽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, 유럽 각국의 보험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산업단체임